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412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교육감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두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현실에서 부교육감 이외에 기획업무담당실장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하겠는바,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의 제반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2. 주 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제반 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3. 이송처

- 청와대,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문

-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인사 등 교육행정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대표적인 사항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자치조직권의 행사범위 제한 문제이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교육청에 두는 부교육감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을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 이중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기획업무담당실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만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직위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 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은 교육비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 등의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업무담당실장은 교육청의 누구보다 해당 지방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1년 혹은 짧게는 6개월마다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업무과약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오히려 지방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인사 지연으로 수개월간 기획조정실장이 궐위 상태로 방치된 바 있어, 교육감이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기획업무담당 실장이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법령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만 기획조정실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교육청간 조직구성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의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